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53577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이종승, 김창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형무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4,333,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23.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64,333,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상호명의신탁

- 1) 분할 전 남양주시 E 임야 49,48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97. 9. 12. E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 및 F 임야 24,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 2) 분할 전 토지는 G의 소유였는데, D은 부재자인 G의 재산관리인으로서 1979. 12. 17. H, I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24,744/49,488 지분씩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D은 1985. 3. 28. 마친 분할 전 토지의 I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1997. 6. 3. D 명의로 위 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H이 1995. 3. 10. 사망함에 따라 H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1995. 8. 12. 원고 명의로 H 지분 중 1,984/49,48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2,149/49,488 지분을 매수한 뒤, 2002. 4.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한편, 1979. 12. 17. 당시 D은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분할 후 E 토지 부분으로 위치를 특정, 구분하여 전자를 H에게, 후자를 I에게 매도하되, 편의상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H과 I 사이에는 위 각 특정 매수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져 있던 24,744/49,488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려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5. 6. 24. J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5. 12. 22. K에게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6. 7. 18. L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이후, J의 상속인인 M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24,744/49,488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11. 26. N, O에게 매각되었다.

다. D의 사망에 따른 상속

D은 2011. 7.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P, 피고 B이 있었는데, P, 피고 B이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916호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1. 10.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피고 C가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토지 중 24,744/49,488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 위 지분에 대하여 J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인 원고 등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원고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이 64,333,9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64,333,95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7.부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종국일인 2013. 3. 11.부터 이자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D과 공모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였고, 그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피고 B이므로, 피고 B 또한 피고 C와 공동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득의 귀속 주체는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아닌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휘